

Section 899 ‘보복세’ 정리

미국 투자 자산 우려에 대한 판단

글로벌 투자전략-선진국

Analyst 황수욱

02. 6454-4896

soowook.hwang@meritz.co.kr

미국 감세 법안에 포함된 '보복세'에 대한 우려의 시각 등장하기 시작

6월 1일 파이낸셜 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에 지난 5월 22일 하원을 통과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 감세안과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감세 법안의 세부 내용 중 Section 899에 대해 우려하는 기사 등장. 이후 국내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언론 기사들이 이어지며 불안감 증폭

미국 기업에 부당한 과세를 부담하는 국가의 미국 자산 투자자에게 과세

미국채나 미국 회사채 이자, 상장기업 배당금, 미국 내 부동산 임대료 등을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투자자가 수령하는 경우 과세 대상(참고: 일반 미국 주식 매매 차익은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에 원천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예를 들어 미국채 및 회사채 이자, 미국 상장기업 배당 소득을 수령하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가 미국 기업에게 '부당 과세'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이 그 국가를 '차별적 외국 국가'로 판단한다면, 해당 상대국의 미국 자산 투자자(개인/법인)은 기존 미국채 이자 수익 및 배당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에 +5%p~+10%p 인상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현실화시 미국 주식/채권 등 미국 투자 자산 매력 하락 요인

해당 조항이 유럽을 우선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는 하나 법안 현실화에 따른 유럽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투자 매력 하락은, 가격 하락 우려로 이어져 다른 외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 입장에서도 미국 주식, 채권 투자 매력을 저하시킬 요인. 주요 IB들에서 해당 조항으로 미국채 수요 축소, 미국 차입 비용 증가, 달러 신뢰 하락을 언급하는 이유일 것

다만 법안이 '협상 카드'임을 상기 필요. 6/1 부각에도 자산가격은 오히려 상승

관련 이슈를 계속 주의 깊게 살펴야겠으나, 걱정만 하기보다는 최근 시장 반응도 함께 고려. 5월 22일 하원을 통과했음에도 미국 주가지수는 오히려 상승, 채권 금리도 5월 21일 이후 우하향 추세에 있음. 세부 내용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기 시작한 6월 초 이후 기준으로 보아도 가격 지표는 아직 안정적

최근 미국 관세 합의 과정에서 뜻대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일부 품목 관세 인상 카드(예: 철강) 등을 꺼내 들지만, 즉각적으로 상대국들이 협상 테이블에 임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4월처럼 증시가 반응하지는 않고 있음. Section 899도 실제 현실화보다 빅테크에게 불리한 법안을 철회하라는 '협상 카드'에 그칠 가능성을 고려. 그리고 오히려 미국이 원하는 바(외국의 빅테크 세금 폐지 등)를 얻게 되는 경우 미국 주식에게는 호재일 수도 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

하원 통과 감세법안에 포함된 Section 899에 대한 우려의 시각

6월 1일 파이낸셜 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에 지난 5월 22일 하원을 통과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 감세안과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감세 법안의 세부 내용 중 Section 899에 대해 우려하는 기사 등장. 이후 국내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언론 기사들이 이어지며 불안감 증폭

Section 899 '보복세'의 골자

Section 899는 소위 '보복세'라고 불리며, 부당한 외국 과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개인 및 법인에 대해, 미국 내 소득에 부과되는 기존 세율에 추가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부과 대상 세율 항목들

타겟이 되는 세율 인상 항목은 1) 고정, 결정, 연간성(Fixed or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FDAP) 소득으로 이자, 배당, 임대료, 급여, 연금, 로열티, 2) 미국 원천 자본 이득, 3) 미국 내 사업연결소득(ECD)에 대한 누진 과세. 4) 미국 내 지점을 둔 외국 법인의 지점 소득세 등

미국채나 미국 회사채 이자, 미국 상장기업 배당금, 미국 내 부동산 임대료 등을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투자자가 수령하는 경우 과세 대상(참고: 일반 미국 주식 매매 차익은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에 원천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타겟 과세 대상: 미국에 대한 불공정 과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개인 혹은 법인 미국 자산 투자자

타겟이 되는 과세 대상은 '불공정 외국 과세(unfair foreign taxes)'를 부과하는 국가의 개인 혹은 법인. 해당 국가의 과세 대상에게 부과되는 관련 세율을 5%p~10%p 인상하겠다는 것

예를 들어 미국채 및 회사채 이자, 미국 상장기업 배당 소득을 수령하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가 미국 기업에게 '불공정 과세'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이 그 국가를 '차별적 외국 국가'로 판단한다면, 해당 상대국의 미국 자산 투자자(개인/법인)은 기존 미국채 이자 수익 및 미국 주식 배당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에 +5%p ~ +10%p 인상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금융시장 관심이 집중되는 배당과 이자 소득 관련 내용 중심 정리

기존 FDAP(이자, 배당, 임대료 등) 소득에 대한 기본 원천징수 세율은 30%이지만, 다수의 국가와 미국은 국가별 이중과세방지협정(DTAA)에 따라 FDAP 원천징수세율 조약상 상한 이하로 감면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조세조약 체결 국가에서는 미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 세율은 0%로 원천징수 면제(중국은 10%로 면제 제외).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은 일반적으로 10%이며, 지분 10% 이상 보유시 5%로 감면, 지배 회사(지분 80% 이상)일 경우 면제되는 방식이 공통적

따라서 해당 법안이 시행 될 경우 일부 국가 투자자에게는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미국채 이자에 대한 세금이 사실상 새로 부과되는 셈. 해당 투자자들에게 미국채 혹은 회사채 투자 매력이 크게 저하되는 효과일 것. 미국 주식 배당에 대한 세금도 기존 과세율을 고려할 때 새로 부과되는 과세가 부담

표1 주요국의 미국과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 이자, 로열티 등에 대한 과세 현황				
국가	배당 소득 (일반/10% 요건/지배회사)	이자 소득 (기본/면제·감면)	로열티 소득 (일반/문학·예술)	조약 발효 연도
한국	15% / 10% / -	0% 면제	15% / 10% 문학·예술	1976(개정 2021)
일본	10% / 5% / 0%	0% 면제	0% / 10% 문학·예술	2003(2004 발효)
영국	15% / 5% / 0%	0% 면제	0% / 5%-15% 문학·예술	2003(2004 발효)
캐나다	15% / 5% / 0%	0% 면제	0% 면제	1980(개정 2007)
독일	15% / 5% / 0%	0% 면제	0% / 10% 특수 문학·예술	1989(개정 2011)
프랑스	15% / 5% / 0%	0% 면제	0% 면제	1994(개정 2009)
중국	10% / 5% / -	10% (일반) / 면제 예외	10% / 10% 문학·예술	1984(개정 2017)
스웨덴	15% / 5% / 0%	0% 면제	0% / 10% 문학·예술	1956(개정 2020)
스위스	15% / 5% / 0%	0% 면제	0% / 5% 문학·예술	1996(개정 2000)
호주	15% / 5% / 0%	0% 면제	5% / 0% 문학·예술	1982(개정 2008)

자료: IRS(2023),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차별적 외국 국가(discriminatory foreign country) 지정 절차

차별적 외국 국가 지정은
미국 재무부의 판단

재무부의 재량적 판단: Section 899는 '차별적 외국 국가'를 '불공정 외국 과세 (unfair foreign taxes)' 시행 국가로 정의, 이러한 과세 형태를 식별, 결정할 권한을 재무부 장관에게 위임. 재무부가 구체적 요건(UTPR, DST, DPT 등 시행 여부)을 검토한 뒤, '부당 외국 과세'로 판단되는 국가를 가이드선스 형태로 공개해 목록 구성

불공정 외국 과세 지정 기준

불공정 외국 과세 지정 기준: Section 899는 네 가지 카테고리로 정의. 1) UTPR(Undertaxed Profits Rule, OECD Pillar 2 규정;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통한 과세 기반 잠식 방지), 2) DST(Digital Services Tax, 디지털세), 3) DPT(Diverted Profits Tax, 다국적 기업의 이익 우회 이전 방지 과세), 4) 기타 재무부가 지정하는 외연적 과세 또는 차별적 과세

UTPR은 OECD 국가들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 과세율을 달성하기 위한 Pillar 2 규정 중 하나로 연매출 7.5억 달러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미국 빅테크가 과세 대상이 됨. DST는 디지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등 특정 매출에 대해 과세, 주요 타깃은 연매출 7.5억 달러 이상 기업으로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겨냥함. 주로 유럽 국가들이 채택 중. DPT는 본국 대신 저렴한 조세 관할지역에 이익을 우회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항목별 과세. 해당 법안 또한 빅테크를 주로 겨냥하고 있음

대부분 EU 국가, 일부 기준에
한국도 포함

따라서 <표 2> 국가들은 Section 899에서 규정한 '불공정 외국 과세'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 추후 '차별적 외국 국가'로 지정 가능. <표 2>의 조세들은 대부분 빅테크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해당 기업들에게 세금 부담을 초래. 주로 EU 국가들이 대부분 시행 중, OECD 국가인 한국도 포함되어 UTPR을 시행 중

표2 Section 899에서 명시하는 불공정 외국 과세와 이를 부과하는 국가: 빅테크를 겨냥한 과세 시행 국가들	
부당 외국 과세 지정 기준	2025년 현재 시행 국가
1) UTPR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한국 , 스페인, 스웨덴, 태국, 터키, 영국
2) DST	오스트리아, 벨기에(계획중), 캐나다, 덴마크(계획중), 프랑스, 기니, 헝가리(계획중), 이탈리아, 네팔,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터키, 우간다, 영국, 짐바브웨
3) DPT	호주, 영국, 인도(유사), 프랑스(계획중), 독일(계획중)
4) 기타 외연적/차별 관세 국가	인도 - Equalisation Levy(2020): 디지털, 광고 플랫폼 매출에 6% 과세, 사실상 미국 빅테크(구글, 페이스북) 주 타깃 폴란드 - DPT 유사 체계 논의: 공식 DPT는 없으나 2025년 UTPR과 결합해 기타 차별 과세로 간주할 가능성 터키 - Additional Financial Transaction Tax: 특정 외국 기업 송금시 7.5% 세율 적용(디지털 광고 포함), 미국 플랫폼 겨냥

자료: Tax Foundation, KPMG, skadden.com, maybrown.com, Reuter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법안의 의도: 협상의 도구

Section 899의 핵심 취지는 어떤 외국 국가가 미국 기업에게 불리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미국은 해당 국가와 연계된 투자자에게 더 높은 미국 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불공정 과세를 철회하게끔 유도하는데 있음. 즉 미국 외에서 빅테크에게 부담하는 과세를 철회하라는 목적의 협상을 시도하는 것

단계에 따라 세율 상향 폭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의 도구 목적으로 볼 수 있음

법안 구조상 미국 정부는 불공정 관세를 유지하고 싶으면 제재 수준을 더 높게 받게 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음. 국가별로 세율 상향 폭을 구분하고 있는 부분을 그 증거로 볼 수 있음

'불공정 외국 과세'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미 지정 국가의 투자자에게는, 과세 항목에 +10%p를 부과하도록 함. 이후 어떤 국가가 재무부의 가이드언스에 따라 공식적으로 '차별적 외국 국가'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와 연계된 외국인법인은 기존 세율에 +5%p만 인상된 세율을 적용

특정 국가가 '불공정 외국 과세'를 시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더라도, 아직 재무부의 공식 지침에 실려 있지 않은 단계는 미지정(discriminatory but not yet listed) 상태. 이 시점에서 해당 국가 투자자에 대해 미국 정부는 더 높은 추가 제재(+10%p) 부과하여 해당 국가가 지정 절차를 밟도록 하는 압박 효과를 노림

차별적 외국 국가로 지정한다고 공표한 이후부터는, 지정 국가에도 조정의 여지를 줌. 지정 국가로서 이후 '자체 시정을 통해 부당 과세 정책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면' 언제든지 해당 국가를 가이드언스에서 제외할 수 있음. 가이드언스에서 제외되어야 추가 과세에서 배제됨. 지정 국가 투자자에게는 5%p 수준으로 다소 낮은 제재를 부과되, 협상 창구는 계속 열어 두어 해당 국가가 조치를 취하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둠

해당 조항의 발효일 예상해볼 때 실제 시행보다는 국가별 합의에 초점을 둔 것으로 유추됨

법안 발효일이 2026년 1월 1일로 예상된다는 점도 그 사이까지 협상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 가능. 발효일(Applicable Date)은 다음 중 가장 늦은 시점을 기점으로 정해짐. 1) Section 899가 통과된 뒤 90일이 지난 첫해 1월 1일, 2) 해당 부당 외국 과세가 시행된 뒤 180일이 지난 첫해 1월 1일, 3) 부당 외국 과세가 실제 시행된 날이 속한 달의 첫해 1월 1일. 지정 국가로 결정되는 해당 발효일(Applicable Date)부터 인상 폭을 적용하기 시작. 공화당 지도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전체 법안 최종 통과일인 7월 4일에 법안이 통과된다고 할 때, 위 기준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이 발효일이 됨

결론 및 시사점

실제 법안 내용이 실현되면 미국 자산 투자 매력 하락 요인임은 분명

미국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해당 법안의 내용은 충격적. 유럽만을 우선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법안 현실화에 따른 유럽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투자 매력 하락은, 가격 하락 우려로 이어져 다른 외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 입장에서도 미국 주식, 채권 투자 매력을 저하시킬 요인. 주요 IB들에서 해당 법안으로 미국채 수요 축소, 미국 차입 비용 증가, 달러 신뢰 하락을 언급하는 이유일 것

다만 최근 시장 반응도 함께 고려할 필요. 이슈 부각 이후에도 관련 자산 가격은 안정적

관련 이슈를 계속 주의 깊게 살펴야겠으나, 마냥 걱정만 하기보다는 최근 시장 반응도 함께 고려할 필요. 5월 22일 하원을 통과했음에도 미국 주가지수는 오히려 상승, 채권 금리도 5월 21일 이후 우하향 추세에 있음. 세부 내용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기 시작한 6월 초 이후 기준으로 보아도 가격 지표는 아직 안정적

최근 관세 합의 과정에서 미국 뜻대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일부 품목 관세 인상 카드(예: 철강) 등을 꺼내 들지만, 즉각적으로 상대국들이 협상 테이블에 임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4월처럼 증시가 반응하지는 않고 있음. Section 899도 결국 실제 시행을 노렸다가 보다는 빅테크에게 불리한 법안을 철회하라는 '협상 카드'에 그칠 가능성을 고려. 그리고 오히려 미국이 원하는 바(외국의 빅테크 세금 폐지)를 얻게 되는 경우 미국 주식에게는 호재일 수도 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